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3.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도로 및 시설물 공터 등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과 고시,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4조)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 → 충청북도주소정보위원회

- 충청북도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주소정보의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광역 도로명 부여를 위한 신청, 서면동의, 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11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청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0. 12. 8.) 되어 2021. 6월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명은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는 기존 충청북도지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에 대해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모든 도로의 명칭에 도로명 사용과 함께 도로변 공터에 도로명주소 기초번호 표시 사용 및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에 도로명 주소 사용과 시설물 공부 등록

및 각종 안내에 사물주소를 활용하여 위치 표시 등 주소정보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조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고시하고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로명주소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는 「도로명주소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공직선거법」과 사전 충돌을 예방하고 각종 교육·회의·행사 등의 장소에서 교육 실시 및 각급 학교의 주소정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안 제11조는 「도로명주소법」 제7조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도지사가 수행하던 도로명주소 등의 부여·변경 등에 관한 신청 접수, 서명 동의, 고지의 업무를 도로명 부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임.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6. 29. ~ '21. 7. 1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설물, 공터 등 주소표시 대상 확대 및 행정구역 미결정지역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 고지, 도지사가 수행하는 도로명주소 등의 부여·변경 등에 관한 신청 접수, 서면 동의, 고지 업무 시·군위임 등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로명주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